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사업 항목에 종합적 원인분석 등 추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8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사업 항목에 종합적 원인분석 등 추가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5일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사업 항목에 종합적 원인분석 등 추가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사업 항목에 ‘국내·외 배출원 및 기상요인에 대한 분석’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분석 결과의 대국민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u>
<u><신설></u>	<u>4.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등에 대한 그 밖의 영향요인의 기여도 분석</u>
<u>3. (생략)</u>	<u>5. (현행 제3호와 같음)</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정보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그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u>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u>관리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다른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⑥ ----- -----<u>제공·관리방법</u>----- ----- --.
--	---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및 배출량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제17조1))하고,

동법 시행규칙²⁾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센터가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대국민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공표하도록 함.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④ (생략)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요]

○ (설립 및 조직 현황)

- 미세먼지 문제의 과학적·체계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개소(충북 청주 오송 소재)
- 센터장^{3급} 2팀(정책지원팀^{4급}, 배출량조사팀^{4급}) 체계, 약 60명

○ (주요 기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국가 공식 통계 산정·공개
- 대기영향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기여도 분석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효과 검증 및 정책 수립 지원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 수집·분석이 주로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외 유입이나 기상요인 등 복합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종합적 규명 및 위해 예방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공표’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국내·외 배출원 및 기상요인 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이미 현행 시행규칙(제6조)에 명시되어 수행 중인 사업이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현행법 제9조³⁾에 따라 매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추진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현행 체계 내에서 충분히 이행 가능하고,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매년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분석 결과' 등을 별도로 발표 및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개정안의 심사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다만, 현행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중심인 반면, 개정안의 제출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전문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대상 및 내용상 차이가 존재함.

※ 참고자료 :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 시행효과 종합분석 결과

□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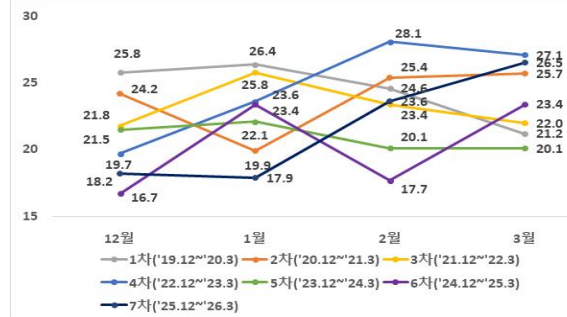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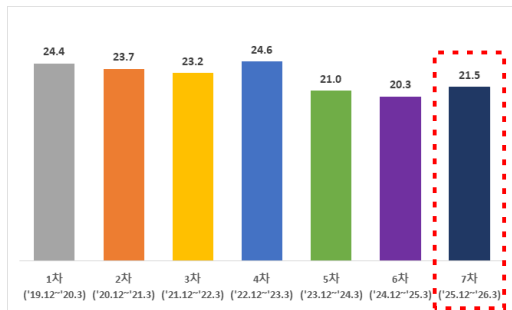
-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의 시행에 따른 배출 감축량, 기상여건, 관측농도, 대기질 농도 기여도를 과학적·정량적으로 종합분석

□ 분석 결과

- (관측농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5\mu\text{g}/\text{m}^3$ 으로, 제6차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 평균농도($20.3\mu\text{g}/\text{m}^3$) 대비 $1.2\mu\text{g}/\text{m}^3$ (3.3%) 증가했으나, 제1~6차 평균농도 $22.8\mu\text{g}/\text{m}^3$ 보다 낮아 개선 흐름 유지
- 제6차 계절제 대비 좋음일수($\leq 15\mu\text{g}/\text{m}^3$) 7일↓, 나쁨일수($> 35\mu\text{g}/\text{m}^3$) 6일↑

<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mu\text{g}/\text{m}^3$) >

※ 황사제외 농도



- (기상여건) 6차 계절제 대비 유·불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1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
- ※ 1월 : 대기 확산 양호, 강수량 증가, 2·3월 : 풍속 및 강수일수 감소, 정체일수 증가

< 제6차·7차 계절관리제 기상 비교 >

구분	계절관리제		변화
	제6차	제7차	
평균기온	2.2℃	2.7℃	+ 0.5℃
강수일수*	26일	23일	- 3일
총강수량	87.3mm	110.9mm	+ 23.6mm
평균풍속	2.0m/s	2.0m/s	同一
정체일수**	55일	56일	+ 1일

* 일강수량이 0.1mm 이상

** 일강수량이 0.5mm 미만이면서 일평균 풍속이 2.0 m/s 미만인 날의 수

< 월별 풍속 및 정체일수 >

구분	풍속(m/s)			정체일수(일)		
	제6차	제7차	변화	제6차	제7차	변화
1월	1.8	2.3	+ 0.5	19	11	- 8
2월	2.3	2.0	- 0.3	9	15	+ 6
3월	2.2	1.8	- 0.4	11	16	+ 5

- (배출 감축량) 제7차 계절제 시행으로 PM-2.5 3,997톤, SOx 37,183톤, NOx 63,799톤, VOCs 31,092톤 배출량 감축

- 제6차 계절제 감축실적 대비 PM-2.5 16%, NOx 5%, VOCs 26% 증가, SOx 1% 감소

< 제7차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및 감축실적(톤/4개월) >

구분	PM-2.5	SOx	NOx	VOCs
6차 감축실적	3,453	37,701	60,577	24,710
7차 감축실적	3,997	37,183*	63,799	31,092
(6차 대비 감축실적 증감률)	(16% ↑)	(1% ↓)	(5% ↑)	(26% ↑)
(계절제 前 배출량 대비 감축률)	(18%)	(44%)	(17%)	(9%)

< 제7차 계절관리제 부문별 배출 감축량(톤/4개월) >

부문	주요대책	PM-2.5	SOx	NOx	VOCs
감축량 합계		3,997 (100)	37,183 (100)	63,799 (100)	31,092 (100)
발전·산업 (6개 과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자발적 협약 등	1,347 (34)	26,909 (72)	52,629 (82)	24,853 (80)
수송 (10개 과제)	5등급차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해역 운영 등	1,725 (43)	10,274 (28)	10,739 (17)	713 (2)
생활 (5개 과제)	도로청소차 운영, 농촌 불법소각 감시·단속 등	924 (23)	-	431 (1)	5,526 (18)

※ ()는 총 감축량 대비 부문별 감축 비중, %

- (대기질 모델링) 제6차 계절제 대비 관측농도 증가분 1.2 $\mu\text{g}/\text{m}^3$ 에 대해 정책효과 1.1 $\mu\text{g}/\text{m}^3$ 감소 기여, 기상영향 0.4 $\mu\text{g}/\text{m}^3$, 국외기타영향 1.9 $\mu\text{g}/\text{m}^3$ 증가 기여

< 제7차 계절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분석결과 >

